

의안번호	2206483
의 퇴 인	전진숙의원
회 답 일	2025.2.5.
추계번호	24D6497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소환투표권자가 국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참여·투표 방법,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에 필요한 홍보·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이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과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34조(국민소환투표의 비용 부담)	국민소환투표의 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1.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국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의무규정
4	안 제42조(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소환투표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국민소환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국민소환투표일까지 해당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을 두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소환투표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국민소환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 중에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45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 및 제41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제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3	안 제34조(국민소환투표의 비용 부담)	
4	안 제42조(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5	안 제45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상세 사유

□ 국회의원 국민소환투표 실시(안 제7조 등)

- 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 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소환투표 실시에 따른 준비, 관리, 투·개표 절차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국민소환투표 청구 및 실시 횟수, 국민소환투표가 발의 될 대상자 수, 투표인의 수¹⁾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회 실시 비용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최근 실시한 전주시을국회의원 재선거 비용은 다음과 같음

[표] 전주시을국회의원 재선거 비용(2023.4.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등	집행액	불용액
선거관리일반	118	—	149	△31
선거운동관리	116	27	140	3
사전투표관리	229	55	274	11
투표관리	198	128	322	4
개표관리	99	21	114	6
계도홍보	80	1	81	—
위법행위 예방단속 (공정선거지원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	130	—	129	1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33	△3	20	10
인터넷선거보도심의	12	—	11	1
선거방송토론관리	32	—	32	—
정책선거	6	—	3	3
선거여론조사심의	15	—	13	2
당내경선	21	—	1	20
보전비용	305	3	308	—
합 계	1,394	233	1,597	3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1) 안 제5조(국민소환투표권자 등)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권은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제16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 ②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③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국민소환투표인이 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모든 국민소환투표권자 가운데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하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이라 한다. 이하 후단에서 같다)이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로 하 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